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안)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전주시 동물원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커피판매점 운영으로 한다. ※ 타목적 사용 일체 불허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8년 7월 9일(2년)까지로 한다. ※ 사용기간은 예정기간이며 낙찰자와 합의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첫째 연도분은 낙찰금액으로 하며, 2차 연도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해 산출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세 10% 포함하여 납부하며,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선납으로 전주시 동물원에서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첫째 연도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체결 및 이행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주시 동물원에 귀속된다. ③ 2차 연도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동법 제25조 제1항 5호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화재 등 각종 피해 예방 및 보존 책임과 더불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 등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2. 경미한 시설물 설치나 변경 시설은 사전에 전주시 동물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시설비는 사용인이 부담하고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정시설물은 설치 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3. 사용인이 필요로 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설비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시설은 사용인이 설치 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이외의 일체의 부과금(제세공과금, 전기, 상하수도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전주시 동물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허가받은 재산 외에 가설 건축물 등을 축조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전주시 동물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재산 외에 가설 건축물 등을 축조할 경우
5.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안전검사 및 전주시 동물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 관람객에게 미관을 저해하거나 관람객들에게 현저히 불편을 초래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책임)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전주시 및 전주시 동물원은 그에 대한 어떠한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전주시 동물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전주시 동물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주시 동물원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전주시 동물원이 원상 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의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전주시 동물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연고권 배제) 본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 일체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일체 전주시 동물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신고 등의 이행)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신고, 등록, 인·허가 등을 반드시 이행하고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커피판매점의 운영) ① 사용자는 판매품목은 본 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판매가격은 원외보다 저렴해야 하며, 시민 편의를 고려해 커피(일반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제품 등) 중 1품목 이상은 3,000원 이하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커피판매점의 판매품목 및 가격은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 한다.

③ 사용자는 커피판매점에서 굽거나 데우는 등 불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일체의 음식물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본 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커피판매점에서만 상품의 적치·판매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 상품의 적치·판매는 금지하며 자판기 설치 또한 금지된다.

⑤ 영업에 불필요한 상품, 동물원 미관을 저해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야적하여서는 아니 되며 냉장고 등 불가피하게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본 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커피판매점에서는 담배, 주류, 유통기한 경과 상품, 식품 제조업 미허가 업체의 제품, 폭죽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제20조(도난 및 손괴 방지 의무)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적인 시건장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 및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1조(재산관리 및 복구 책임)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즉시 복구하거나 전주시 동물원의 요구에 따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전주시 동물원이 복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위생 및 청결유지)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사용인은 항상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사용인이 제공한 음식물 및 음료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민·형사상의 모든 보상의무를 진다.

2. 커피판매점 주변 청소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성실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수익허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4. 불친절 및 커피판매점 위생상태 등에 관하여 동물원 직원은 지적, 점검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23조(제소전화해) 사용인은 전주시 동물원에서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사용재산 명도 등이 포함된 제소전화해에 응해야 한다. 사용인이 제소전화해 신청에 응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를 무효로 한다.

제24조(허가조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동물원의 해석에 따른다.